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28
----------	-------

발의연월일 : 2026. 5. 12.

발 의 자 : 이수진 · 박희승 · 김남희
김태년 · 서영석 · 이학영
임오경 · 송옥주 · 박해철
안도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의 공급 절차·방법 및 대상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는 장기간 공급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의료시설용지는 주민의 정주여건과 의료접근성 확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성격을 가짐에도 장기 미공급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자가 장기간 공급되지 아니한 의료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시설의 적기 확충과 택지개발사업

의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의2 신설).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행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시설의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의료시설용지의 매각 촉진 및 관리 등) ① 시행자는 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부지의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시행자는 해당 용지가 매각될 때까지 매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에 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매각방안을 시행자와 논의하여야 한다.

- ④ 시행자는 논의 결과를 매각 전략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u>제19조의2</u>(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생략)</p>	<p><u>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에 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매각방안을 시행자와 논의하여야 한다.</u></p> <p>④ <u>시행자는 논의 결과를 매각 전략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u>제19조의3</u>(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현행 제19조의2와 같음)</p>
--	--